

1. 개정이유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병종 지급대상이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병종 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수당조정 요구를 통해 합의된 간호조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종 및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 항공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며,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라 도태된 장비의 삭제 및 신규 전력화된 장비를 추가하고, 숫자에 붙이는 단위명칭을 국제·국가표준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2.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의 지급대상란 제1호 중 “1년”을 “1 년”으로, “100미터”를 “100 m”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중 “40미터”를 “40 m”로 하며, 같은 란 가목 중 “1,500미터”를 “1500 m”로 하고, 같은 표 2.의 지급대상란 제2호 중 “20 ~ 40미터”를 “20~40 m”로 하며, 같은 표 1.의 지급대상란 제1호 중 “3,300볼트”를 “3300 V”로 하고, 같은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8.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탐제회전의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탐제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394,100 대위: 324,200 중위·소위·준위: 274,000 원사·상사·중사: 274,000 하사: 169,100 병: 32,700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영관: 197,000 대위: 161,000 중위·소위·준위: 150,400 원사·상사·중사: 150,400 하사: 105,200 병: 32,700

별표 2의 항공수당(을) 제2호의 지급대상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를 “항공구조사”로 한다.

라. 급유통제기 급유통제사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연장, 장애물 개척전차,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저, 에리콘”을 “대전차유도무기, 대공포, 다련장 · 로켓, 장갑전투도저”로, “호크, 나이키, 패트리엇,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 · K211 · K216 · K316 · K317 · K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 미사일, 전술미사일”을 “대공유도무기, 지대지유도무기, 방공레이더, 화생방 제독차 및 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 미사일”로, “대포병탐지레이다”를 “대포병탐지레이더”로 한다.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지급대상란의 “간호사”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며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사 : 50,000 간호조무사 : 30,000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엇”을 “대공유도무기”로, 사목 중 “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을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다련장 · 로켓”으로, “TPQ-36 · 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 · K211 · K216 · K316 · K317 · K318 등 화학장비”를 “표적탐지 · 화력통제레이더, 방공레이더 및 통제장비, 화생방 제

독차 및 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로,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을 “대전차유도무기, 미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갑 중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487,900 대위·중위·소위·준위: 463,300 원사·상사·중사: 458,200	갑 중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 m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487,900 대위·중위·소위·준위: 463,300 원사·상사·중사: 458,2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나. 가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해상특전요원	영관 이상: 443,500 대위·중위·소위·준위: 356,400 원사·상사·중사: 352,400 하사: 245,700 병사: 240,2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40 m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나. 가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해상특전요원	영관 이상: 443,500 대위·중위·소위·준위: 356,400 원사·상사·중사: 352,400 하사: 245,700 병사: 240,200
	3. 제2호나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324,000 원사·상사·중사: 320,400 하사: 223,400 병사: 218,400		3. 제2호나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324,000 원사·상사·중사: 320,400 하사: 223,400 병사: 218,40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205,900 원사·상사·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기에 2회 이상 1500 m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205,900 원사·상사·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5.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185,900 원사·상사·중사: 182,600 하사: 123,800 병사: 118,800		5.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185,900 원사·상사·중사: 182,600 하사: 123,800 병사: 118,800

현행			개정안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을 중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138,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13,600 원사·상사·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을 중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138,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13,600 원사·상사·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영관 이상: 95,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9,000 원사·상사·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 m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영관 이상: 95,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9,000 원사·상사·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원사·상사·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원사·상사·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영관 이상: 125,300 대위·중위·소위·준위: 103,000 원사·상사·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영관 이상: 125,300 대위·중위·소위·준위: 103,000 원사·상사·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4.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6.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영관 이상: 3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29,000 원사·상사·중사: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병 중	1. 3300 V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4.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6.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7.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8.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영관 이상: 3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29,000 원사·상사·중사: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현행			개정안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탐제회전의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탐제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358,300 대위: 294,700 중위·소위·준위: 249,100 원사·상사·중사: 249,100 하사: 153,700 병: 32,7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탐제회전의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탐제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394,100 대위: 324,200 중위·소위·준위: 274,000 원사·상사·중사: 274,000 하사: 169,100 병: 32,700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영관: 179,100 대위: 146,400 중위·소위·준위: 136,700 원사·상사·중사: 136,700 하사: 95,600 병: 32,700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영관: 197,000 대위: 161,000 중위·소위·준위: 150,400 원사·상사·중사: 150,400 하사: 105,200 병: 32,700
항공수당(을)	2.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영관: 524,000 대위: 389,000 중위·소위·준위: 296,000 부사관: 280,000	항공수당(을)	2.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	영관: 524,000 대위: 389,000 중위·소위·준위: 296,000 부사관: 280,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준위: 204,000 부사관: 194,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준위: 204,000 부사관: 194,000
군인 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현공, 발칸, 천무, 다연장, 장애물 개척전차,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저,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엇,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제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K317·K318 등 화확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 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요원	35,000	군인 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대전차유도무기, 대공포, 다련장, 로켓, 장갑전투도저, 전차, 자주포, 대공유도무기, 지대지유도무기, 방공레이더, 화생방 제독차 및 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 미사일 및 B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요원	35,000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0,000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간호사: 50,000 간호조무사: 30,000

현행			개정안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군인의료수당	6. 특수분야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보유자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엇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잠수함정 · 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 · 수리창 · 해군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 · 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 · K211 · K216 · K316 · K317 · 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분야에서 조립 · 생산 ·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 · 영상 · 계측기호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기본 지급액 - 군인(3년 초과): 8만원 - 군무원: 6만원 ○ 가산금 - 기술사: 5만원 - 기능장 및 기사: 3만원 - 산업기사: 2만원	군인의료수당	6. 특수분야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보유자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방공포부대에서 대공유도무기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잠수함정 · 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 · 수리창 · 해군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특수무기(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다련장·로켓,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방공레이더 및 통제장비, 화생방 채독차 및 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 자주포, 대전차유도무기, 미사일) 분야에서 조립 · 생산 ·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 · 영상 · 계측기호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기본 지급액 - 군인(3년 초과): 8만원 - 군무원: 6만원 ○ 가산금 - 기술사: 5만원 - 기능장 및 기사: 3만원 - 산업기사: 2만원